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30

발의연월일: 2025. 2. 21.

발 의 자: 손명수 · 남인순 · 박용갑

김한규 · 김태년 · 문정복

윤종군 • 정태호 • 김원이

염태영 • 민형배 • 이연희

조인철 · 송기헌 · 안태준

의원(15인)

제안이유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산업 사망자의 44% 수준임. 또한, 고령화, 저출생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여성 등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반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저출산 등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인프라의 안정적인 정비와 건설안전 확보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확산 보조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안전·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전문인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이 있는 상황임.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4호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지원센터 포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창업지원, 건설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
-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건설 기술 개발 및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융자,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의3 신설).
-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10조의4 신설).
-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의5 신설).
- 바. 스마트건설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안 제10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품질·안전·시공성 향상 등을 위하여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건설기술에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디지털화, 자동화, 탈현장화 등 산업 고도화에 기여하는 첨단기술을 말한다.
- 14. "스마트 건설사업"이란 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공사 수행 과정에서 제13호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융·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스마트 건설기술 등의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이하 "융·복합건설기술 건설기술"이라 한다)"을 "스마트 건설기술"로, "활용을"을 "활용,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융·복합건설기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융·복합건설기술"을 각각 "스마트 건설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융·복합건설기술"을 각각 "스마트 건설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융·복합건설기술"을 각각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융·복합건설기술"을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사업"으로 한다.

- 1.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사업 관련 정책개발
- 6.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실적 등 평가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재정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재정지 원, 융자 및 보증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4(전문인력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 사업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 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의5(민관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의 확산을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기관·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6(우수기업 선정ㆍ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보급 및 활용,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13.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 |
| | 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품 |
| | <u>질·안전·시공성 향상 등을</u> |
| | 위하여 제2호의 각 목에 따른 |
| | 건설기술에 정보통신, 전자, |
| | 기계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
| | 적용함으로써 디지털화, 자동 |
| | 화, 탈현장화 등 산업 고도화 |
| | 에 기여하는 첨단기술을 말한 |
| | <u>다.</u> |
| <u><신 설></u> | <u>14. "스마트 건설사업"이란 제3</u> |
| |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제 |
| | 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 |
| | 호에 따른 건설공사 수행 과 |
| | <u>정에서 제13호에 따른 스마트</u> |
| |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
| | <u>말한다.</u> |
| 제10조의2 <u>(융·복합건설기술의</u> | 제10조의2(스마트 건설기술 등의 |
| <u>활성화)</u>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u>활성화)</u> ① |
|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 | <u>스마트 건설기술</u> |

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 합한 기술(이하 "융 · 복합건설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융 · 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 |
- 2. 융·복합건설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 3. 융ㆍ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 의 수집 • 관리
- 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분석 <신 설>

| | 활용, | 스마트 | 건설사업의 |
|-----|-----|-----|-------|
| 활성회 | -를 | | |
| | | | |

- ② ----- 스마트 건 설기술 및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 ·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 마트건설지원센터(권역별 스마 트건설지원센터를 포함한다)--
 - (3) ----------
 - 1.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사 업 관련 정책개발
 - 2. 스마트 건설기술-----
 - 3. 스마트 건설기술-----
- 4. 융 · 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4.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사
- 5. 국내외 용・복합건설기술 동 5. ----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 설사업 -----
 - 6.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실적 등 평가

6. 그 밖에 <u>융·복합건설</u>기술의 7.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 <u>사업</u>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재정지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 술 개발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재정지원, 융자 및 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4(전문인력 양성) 국토교 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사업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의5(민관 협력)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건설의 확산을 위 하여 산업계 · 학계 · 연구기관 ·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6(우수기업 선정ㆍ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 보급 및 활용, 스마 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